

자유주의 통치성의 출현과 인간안보 :

인간안보에 대한 푸코주의적 접근* **

박 흥 서

(동덕여자대학교)

〈 차례 〉

- | | |
|--|-------------------------|
| I. 서론 | Ⅲ. 국제정치의 균형과 인간안보 |
| Ⅱ. 자유주의 통치성의 등장과 인간안보 | 1. 지구적 자유주의 통치성과 국가간 균형 |
| 1. 자유주의 통치성의 등장 | 2. 지구적 균형 기제로서의 인간안보 |
| 2. 생명정치와 인간안보:
“살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 두는” | Ⅳ. 결론: 인간안보의 폐기? |
| 3. 신자유주의와 인간안보:
“선별적”으로 살리고 죽게 내버려두는” | |

· 주제어: 인간안보, 통치성, 미셸 푸코, 생명정치, 세력균형, human security, governmentality, Michel Foucault, biopolitics, balance of power

【한글초록】

본 논문은 푸코가 제기한 자유주의 통치성과 생명정치 담론을 통해 인간안보를 분석한다. 자유주의적 통치성에 기반한 조절권력은 기존의 주권권력이나 규율권력과는 그 작동방식이 상이하다. 주권권력이나 규율권력이 금지와 허용이라는 이항분할 전략에 기초해 개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조절권력은 그러한 억압적 방법이 아닌 방임적 전략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권력행사를 추구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조절권력은 대내적으로 내치와 대외적으로는 균형체제라는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그 권력의 핵심자산인 인간의 생명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인간안보 개념은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조절권력의 속성을 내포한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확산됨에 따라 인간안보의 적용과정에 있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즉, 해당 개인과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그렇지 못한 주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전략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적 인간안보 전략은 신자유주의적 인간안보 담론을 비판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실천적 전략들을 생산해야 한다.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8-B00027).

**본 논문에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푸코(Michel Foucault)가 제시한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을 통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등장 배경 및 그 전개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인간안보 개념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HDR)』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그동안의 안보개념들이 인간 개인의 안전보다는 국가안보와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overty)”로 정의되는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

이후 인간안보에 관한 논의는 그 적용대상을 둘러싸고 최소주의적 접근과 최대주의적 접근으로 분화되었다. 최소주의적 접근은 주로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인간안보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군사적 분쟁방지를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가 주도하는 ‘개입 및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는 대내외적 분쟁으로 인한 인간안보의 침해를 방지하는데 주력하는 최소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최대주의적 접근은 인간안보의 대상을 공포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까지 확장한다. 즉, 무력 분쟁뿐만 아니라 빈곤,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인간안보의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주도하에 창설된 인간안보위원회(Commission on Human Security: CHS)는 이러한 최대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²⁾

한편, 인간안보에 대한 국내외의 기존 논의들은 대부분 정책 지향적인 특성을 가진다. 즉, 인간안보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형(problem-solving)’ 연구들이나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논의들은 기존의 현실주의 이론이 강조하는 국가중심적 안보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탈냉전 및 지구화에 따른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아울러 제 3세계 지역 등 주로 내전이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인간안보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지역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를 모색한다.³⁾ 그러나 주로 자유주의적 시각에 기초한 문제해결형 접근은 인간안보의 침해상황과 그 해

1)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HDR)*, 1994, http://hdr.undp.org/en/media/hdr_1994_en_chap2.pdf (검색일: 2012. 7. 9); Shahrbanou Tadjbakhsh and Anuradha M. Chenoy, *Human Security: Concepts and Implications* (London: Routledge, 2007), pp. 15-16 and p. 24.

2) Tadjbakhsh and Chenoy (2007), pp. 47-54.

3) Derek S. Reveron and Kathleen A. Mahoney-Norris, *Human Security in a Borderless World* (Boulder: Westview Press, 2011); Sorpong Peou (ed.), *Human Security in East Asia: Challenges for Collaborative Action* (London: Routledge, 2009); Jamila J. Abubakar, Kenneth Omeje, and Habu Galadima (eds.), *Conflict of Securities: Reflections on State and Human Security in Africa* (London: Adonis & Abbey, 2010); 전웅,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제44집 (1)호 (2004), pp. 25-48; 이신화,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정치: 세계정치와 동아시아의 안보구상』 (서울: 인간사랑, 2006),

결책에 과도한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간안보 개념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 등을 기정사실화하는 현상유지적 속성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안보에 대한 비판이론적 접근은 인간안보를 보다 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콕스(Robert Cox)에 따르면, 비판(critical) 이론은 문제해결형 이론과 같이 몰가치적 연구행태를 추구하기 보다는 연구대상과 관련한 종래의 개념 및 구조 등을 ‘문제화(problematizing)’ 시킴으로써 그 이면에 내재된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비판이론은 기정사실화된 현실을 ‘해체’하고 그로부터 인간들을 ‘해방’시키려는 가치 지향적 연구행태를 보인다.⁵⁾ 인간안보에 대한 비판적 접근들 역시 인간안보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경제적 권력관계를 그 핵심적 연구대상으로 상정한다. 예를 들어, 선진부국들은 인간안보 개념을 통해 그들의 자국중심주의를 빈국들에게 강요하고 아울러 약소국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⁶⁾

이와 같다면,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자 미셸 푸코의 방법 및 존재론적 논의들은 인간안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비판하는데 매우 적절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해 준다. 푸코는 소위 ‘계보학’이라는 특유의 방법론을 통해 현실이라고 인식된 현상들(광기, 감옥, 성)을 전복적으로 재해석한다. 푸코에 따르면, 계보학의 목표는 권력에 의해 위계지어지고 통제되어온 인간의 ‘삶’들을 해방시키기, 즉 “삶들의 붕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⁷⁾ 이를 위해 푸코는 “각각의 제도 밖으로 나와서 권력의 테크놀로지라는 포괄적 관점으로 제도[의 관점]를 대체하라”라는 방법론적 원칙을 제시한다.⁸⁾ 이러한 계보학적 접근은 인간안보 개념에 대한 전복적 해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 안에 은폐되어 있던 권력관계들을 포착하게 해줄 수 있다. 아울러 ‘생명정치(biopolitics)’에 대한 푸코의 논의 역시 인간안보 연구에 보다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적’ 함의를 제공한다.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애초 생명을 ‘죽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

pp. 65-114; 이상환, “전염병과 인간안보, 그리고 국가안보,” 『국제지역연구』 제12권 (3)호 (2008), pp. 229-249; 안득기, “인간안보와 지역협력 사례연구: 동티모르 사태와 동아시아 국가협력을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제2권 (2)호 (2009), pp. 189-213.

4) Edward Newman, “Critical Human Security Stud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6 (2010), p. 89.

5) Robert W. Cox,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pp. 207-210.

6) Tadjbakhsh and Chenoy (2007), pp. 64-65; March Duffield, “Human Security: Linking Development and Security in an Age of Terror,” in Stephan Klingebiel (ed.), *New Interfaces between Security and Development: Changing Concepts and Approaches* (Bonn: Dt. Inst. für Entwicklungspolitik, 2006), pp. 21-25.

7) 미셸 푸코, 박정자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서울: 동문선, 1998a), pp. 26-28. “계보학이 싸워야 할 것은, 소위 과학적이라고 간주되는 담론이 갖는 고유한 권력의 효과에 대항해서이다.” 미셸 푸코 (1998a), p. 27.

8) 미셸 푸코, 오트르망 역, 『안전, 영토, 인구』 (서울: 난장, 2011), p. 170 and p. 172. 푸코의 논의에 대한 대표적 오독중 하나는 푸코가 광기와 같은 현상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에 대해 자신의 주장은 광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기를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광기와 같은 현상은 그것이 정치화되는 사회적 맥락과 결부시켜 해석할 때 보다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셸 푸코, 이승철 역, 『푸코의 맑스: 듯치오 트롬바도리와의 대담』 (서울: 갈무리, 2010b), pp. 68-69.

습을 드러내었으나, 근대 자유주의의 도래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인간안보의 등장 배경은 푸코가 ‘통치성(governmentality)’으로 명명한 이러한 권력메커니즘의 변화로부터 포착해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푸코철학에 관한 관심이 영어권 및 국내 학계에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특히, 1970년대 후반 콜레주 드 프랑스(the College de France)에서 진행된 생명정치에 관한 푸코의 강연들이 번역 소개되면서 푸코의 논의들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⁹⁾ 그럼에도 푸코를 통해 인간안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기 힘들며, 외국 학계에서도 푸코의 생명정치 논의를 인간안보에 연결시키려는 시도들은 최근의 연구 동향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푸코와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생명정치 개념을 토대로 인간안보를 분석하거나, 인간안보가 생명권력(biopower)뿐만 아니라 국가중심의 전통적 주권권력의 통제 기제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를 국제정치적 수준으로 확장해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치적 기제로 설명하고 있다.¹⁰⁾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 비해 생명정치에 관한 푸코의 논의를 인간안보 분석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와 국가간 세력균형체제에 대한 푸코의 역사 분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인간안보가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을 포괄해 어떻게 권력메커니즘으로 변화·작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우선 푸코가 제시한 통치성 개념을 바탕으로 생명정치의 등장을 설명하며, 그것이 인간안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아울러 3장에서는 인간안보를 국제질서의 균형 유지 기제라고 주장하며, 결론에서는 대안적 인간안보에 대한 간략한 모색을 시도할 것이다.

9) Brad Evans, “Foucault’s Legacy: Security, War and Violence in the 21st Century,” *Security Dialogue* 41-4 (2010), pp. 413-414; “삶 통제하는 신자유주의.. 푸코에게 대안을 묻다,” 『한겨레신문』 (2012. 2. 21),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520146.html> (검색일: 2012. 8. 26).

10) Duffield (2006), pp. 11-38; Evans (2010), pp. 413-433; Miguel De Larrinaga and Marc G. Doucet, “Sovereign Power and the Biopolitics of Human Security,” *Security Dialogue* 39-5 (2008), pp. 517-537; Suvi Alt, “Problematizing Life under Biopower: A Foucauldian versus an Agambenite Critique of Human Security,” in David Chandler and Nik Hynes (eds.), *Critical Perspectives on Human Security: Rethinking Emancipation and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2011, kindle edition), locations 4007-4386; Nadine Voelkner, “Governmentalizing the State: the Disciplining Logic of Human Security,” in Miguel de Larrinaga and Marc G. Doucet (eds.), *Security and Global Governmentality: Globalization, Governance and the State* (London: Routledge, 2010, kindle edition), locations 3836-4324.

II. 자유주의 통치성의 등장과 인간안보

1. 자유주의 통치성의 등장

푸코의 저작들에서 일관되게 구사되는 계보학적 방법론은 기존 제도와 기능의 ‘외부’로 나가 다시 그곳으로부터 그 제도와 기능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푸코는 정신병이나 감옥체계 등에 작동되고 있는 권력 기제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정신의학을 고전주의 시대 이후 이성적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비정상인’을 격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권력기제로 이해한다거나, 수형자와 간수 사이의 ‘봄과 보임’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비대칭적인 학교 및 감옥의 구조로부터 충순한 개인을 양육하려는 규율권력(disciplinary power)을 밝혀내고 있다.¹¹⁾

푸코가 『안전, 영토, 인구(security, territory, population)』에서 최초로 도입한 통치성 개념은 이러한 계보학을 방법으로 삼아 국가라는 총체적 제도를 분석하는데 필수적 개념이다. 푸코에 따르면, 정신의학 및 감옥체계라는 제도들의 배후에 규율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면, 국가는 ‘최종심급’에서 그러한 규율 메커니즘의 적용행위에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총체적 제도가 된다. 통치성은 바로 그러한 국가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포괄적인 권력 메커니즘을 의미한다.¹²⁾ 따라서, 통치성은 ‘거버넌스(governance)’와는 상이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국가가 경험적인 대내외적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풀이형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통치성 개념은 그러한 국가의 거버넌스가 권력관계 속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축되었는가에 관한 문제와 연결된다. 푸코가 이해하는 ‘통치(government)’의 의미가 사람들의 행동을 지도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 즉 “품행의 관리(the conduct of conduct)”라고 정의된다면, 통치성은 그러한 통치가 역사적으로 형성, 변화되어온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다.¹³⁾

11) “소소한 범죄들과 소소한 정신병, 사소한 범법, 그리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비정상들이 결국 정신 의학의 기본과 골격을 이루는 장이 된다.” 미셸 푸코, 박정자 역, 『비정상인들』(서울: 동문선, 2001), p. 196; “가시성의 영역에 예속되어 있고,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용시키도록 한다. 그는 권력관계를 내면화하여 일인이역을 하는 셈이다.” 미셸 푸코, 오성근 역, 『감시와 처벌』(서울: 나남, 1998b), p. 299.

12) 미셸 푸코 (2011), pp. 173-175; Michel Foucault,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New York: Picador, 2007), p. 119.

13) 미셸 푸코 (2011), pp. 175-178; Foucault (2007), pp. 120-122; Colin Gordon, “Governmental Rationality: An Introduction,”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and Peter Miller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With Two Lectures by and an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pp. 2-3; Majia Holmer Nadesan, *Governmentality, Biopower, and Everyday life* (New York: Routledge, 2008, kindle edition), locations 262-280. 푸코 사후, 통치성 개념은 로즈(Nikolas Rose), 고든(Colin Gordon), 동즐로(Jacques Donzelot), 그리고 램케(Thomas Lemke) 등에 의해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서동진, “신자유주의 분석가로서의 푸코: 미셸 푸코의 통치성과 반정치적 정치의 회로,” 『문화/과학』 16권 2호 (2009), p. 317 참조.

역사적으로 통치성은 주권권력(sov^{er}ign power), 규율권력(disciplinary power), 그리고 조절권력(regulatory power)의 형태로 나타난다. 주권권력과 규율권력은 ‘금지’와 ‘허용’이라는 이항분할을 그 토대로 삼는 반면, 조절권력은 ‘방임’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법체계에 기반하는 주권권력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면 개개 신체에 작동하는 규율권력은 “해야 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다소간의 차이점이 존재하나, 양자 모두 무엇인가를 금지하고 명령한다는 억압적 속성을 가진다. 이에 반해, 조절권력은 “하게 내버려두는” 방임적 속성을 드러낸다. 즉, 조절권력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행해지거나, 해야 할 것이 행해지지 않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개입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러한 현상들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절권력은 통치의 문제를 법이나 규율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다루는 물리학으로 간주하며, 그 통치의 대상을 정성적 의미의 인민이 아니라 정량적 의미의 종으로서의 인간, 즉 ‘인구(population)’로 간주한다.¹⁴⁾ 예를 들어, 주권 및 규율권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규제적 속성을 갖는 반면 조절권력은 교통법규 위반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것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제어하려는 사회물리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양식 가운데 푸코는 특히 마지막 조절권력에 주목한다. 조절권력은 18세기 전후시기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출현한 자유주의적 통치성이었다. 물론, 푸코에 따르면, 조절권력이 사법적 주권권력이나 규율권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세 가지 권력 메커니즘은 각각 역사적으로 단절된 채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련의 “복합적인 건조물(complex edifices)”을 이루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상호간의 관계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¹⁵⁾ 이러한 전제하에 푸코의 핵심 연구대상은 주권권력을 ‘뒤집는’ 자유주의적 통치성, 그것의 주요 대상인 인구, 그리고 이를 위해 봉사하는 기술인 정치경제학 사이의 연관 관계가 된다.¹⁶⁾

푸코는 자유주의 통치성의 기원을 탐색하기 위해 16세기부터 18세기 말까지 폭발적으로 산출되기 시작하는 통치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에 주목한다. 푸코는 이러한 문헌 중 자유주의 통치성의 등장을 알리는 핵심적 저작으로 라 페리에르(Guillaume de La Perriere)의 『정치적 거울(Le Miroir politique)』에 주목한다. 라 페리에르 저작에서 핵심적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국가를 통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다. 즉, 가장이 가족들을 잘 다루고 가정의 부를 늘리기 위한 경제적 관리 방식을 국가를 통치하는데 어떻게 도입하는가의 문제였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시각은 당시 군주의 통치술에 관한 마키아벨리의 주장과 전혀 상반된 성격의 것이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군주는 그의 공국으로부터 초월적(transcendent), 외재적(external) 존재이기 때문에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단지 자신의 소유물인 공국을 유지하고 보호하기만 하면 되었다.¹⁷⁾ 이런 의미에서 푸코는 마키아벨리를 근대정치사상의 선구자라

14) 미셸 푸코 (2011), pp. 22-25 and pp. 80-85; 미셸 푸코 (1998a), pp. 280-285.

15) 미셸 푸코 (2011), pp. 26-27 and p. 162; Foucault (2007), p. 8.

16) 미셸 푸코 (2011), p. 162; Foucault (2007), p. 108.

17) 미셸 푸코 (2011), pp. 138-145; Foucault (2007), pp. 92-95.

기보다는 “어떤 시대의 종결을, 혹은 군주와 그 영토의 안녕이 중요한 문제였던 시기의 정점에 닿았”던 인물로 평가한다.¹⁸⁾

통치에 경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푸코는 그것을 “사물을 올바르게 배치(arrange)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군주 권력이 그러한 배치를 주로 “공공선의 달성”이라는 명목으로 추구한다면, 이해 비해 경제적 통치는 “적절한 목적들”(최대한의 부 창출, 충분한 생계수단 제공, 인구증가)을 위해 도모한다. 아울러 경제적 통치는 주권권력의 사법적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전술을 통해 그러한 배치를 어떻게 하면 완전(perfection)하게 하고 극대화(maximization)시킬 수 있으며 또한 강화(intensification)시킬 수 있는지에 전념한다.¹⁹⁾

푸코는 이러한 새로운 통치술이 등장하게 된 주요한 사회적 배경은 중상주의 시기 후반 통화 및 인구팽창에서 찾는다.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인구 자체와 그것의 조건들(부, 수명,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통치의 수단이자 목표가 되었다. 즉, “인간들의 복락을 국가의 유용성으로 만드는 것, 인간들의 행복을 국력 자체로 만드는 것”이 통치의 핵심 목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²⁰⁾ 이제 “생명과 생명의 메커니즘을 명확한 계산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고 권력-지식을 인간 생명의 변화 요인으로 만드는” 생명정치가 탄생한 것이다.²¹⁾

2. 생명정치와 인간안보: “살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 두는”

권력의 대상으로서의 생명에 대한 푸코의 관심은 『성의 역사: 지식의 의지(History of Sexuality, Vol. 1)』에서 최초로 개진된다. 푸코는 전통적인 군주 권력의 핵심을 “생사여탈권”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생명정치와 대비시킨다. 전통적으로 군주 권력은 ‘칼’로 상징되며, 사회로부터 무엇인가를 강탈하는 권력이었다. 즉, 군주 권력은 “신민의 생산물, 재산, 봉사, 노동, 피에 대한 착취의 형태로 행사되었다. 권력은 무엇보다도 물건, 시간, 육체, 마지막으로 생명에 대한 탈취권에서 절정을 이루었던 것”이다. 따라서 군주는 생명을 죽이거나 혹은 죽이는 것을 자제함으로써만 그의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권력은 “죽이거나 혹은 살게 내버려 두는(take life or let live)” 권력이며 결국 죽음을 통해서만 행사되는 것이다.²²⁾

그러나 자유주의 통치성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권력의 속성이 전복된다. 권력은 이제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표출되기 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현시된다. 즉, “죽이거나 혹은 살게 내버려두었던” 권력은 이제 “생명을 증진시키거나 혹은 죽음 속으로 몰아가는(foster life or disallow it to the point of death)” 권력으로 변화된 것이다. 권력의

18) 미셸 푸코 (2011), p. 103; Foucault (2007), p. 65.

19) 미셸 푸코 (2011), p. 151; Foucault (2007), p. 99.

20) 미셸 푸코 (2011), p. 446; Foucault (2007), p. 327.

21)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서울: 나남, 2010a), p. 154; Michel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Introduc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90), p. 143.

22) 미셸 푸코 (2010a), pp. 146-147; Foucault (2010a), p. 136.

메커니즘은 더 이상 생명을 “덜어냄(deduction)”으로써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에 끊임없이 “투자(invest)”함으로써 기능하게 된다. “권력은 살해의 위협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떠맡음으로써 육체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²³⁾

물론, 조절권력이 기존의 권력양식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상술했듯이, 주권권력, 규율권력, 그리고 조절권력은 상호 대체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차원에 위치하지만 하나의 복합적 건조물을 구성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그럼에도 규율권력이 다수의 인간들을 감시, 훈련, 이용, 처벌의 대상으로 해부하려는 “개별화(individualizing)” 모델이라면, 조절권력은 상이한 인간들을 출생, 사망, 출산, 질병과 같은 보편적 생명현상을 갖는 대상으로 취급하려는 “전체화(totalizing)”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조절권력은 생명을 관리하기 위해 공중보건이나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그 학술적 토대로서 의학 및 인구통계학 등을 중요한 지식으로 간주하게 된다.²⁵⁾

이와 같다면, 새롭게 등장한 조절권력은 왜 생명을 그 핵심대상으로 상정하는가? 그것이 단순한 ‘인도주의’ 때문이 아니라면, 권력이 생명현상에 침투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푸코는 이를 자본주의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한다. 즉,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들을 성장시키고 최대한 이용하면서도 그들을 더 쉽게 “순종(docility)”시키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살아 있는 육체의 투자, 살아 있는 육체의 중시, 살아 있는 육체의 힘에 대한 배분적 관리는 자본주의 발전과 불가결한 것이었다.”²⁶⁾ 규율권력 역시 노동력을 최적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조절권력과 동일하지만, 규율권력이 노동자 개개인의 육체에 대해 투사되는데 비해 조절권력은 인구 전체의 균형과 조절이라는 차원에서 행사된다.²⁷⁾

따라서 조절 권력은 필연적으로 “안전장치(apparatus of security)”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즉, 전체 인구를 최적화된 ‘노동기계’로 양육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병, 범죄, 혹은 사고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푸코는 인구에 대한 국가의 이러한 관리행위를 “내치(police)”라고 개념화한다. 내치는 인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생활필수품과 공중보건을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근면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등 인간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결국, 내치는 인간의 생명, 그리고 단순히 사는 것 이상의 “지복(felicity)”을 국가의 유용성으로 만드는 행위, 다시 말해 “인간의 행복을 국력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²⁸⁾

23) 미셸 푸코 (2010a), p. 154; Foucault (1990), pp. 136-139 and p. 143.

24) 미셸 푸코 (1998a), p. 280 and p. 289. 푸코는 규율권력과 조절권력이 교차하는 핵심적 대상으로 ‘성(sex)’을 거론한다. 규율 권력이 아동의 자위행위 금지와 같이 개별 신체에 투사된다면, 조절권력은 성의 생식적 효과에 연결된 인구문제에 관여한다. 미셸 푸코 (1998a), pp. 289-290; 미셸 푸코 (2010a), pp. 157-162.

25) 미셸 푸코 (1998a), pp. 280-281.

26) 미셸 푸코 (2010), pp. 152-153.

27) 미셸 푸코 (1998a), pp. 284-285; 미셸 푸코 (1998b), pp. 204-206. 이러한 상황은 영화 “매트릭스(Matrix)”속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인공지능은 인간들에게 안락한 ‘현실(매트릭스)’을 제공하지만, 진정한 현실속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체에너지를 인공지능에 제공하기 위해 거대한 보육 캡슐에서 양육되고 있다. 슬라보예 지젝 외, 이운경 역, 『매트릭스로 철학하기』 (서울: 한문화, 2011), pp. 248-251.

28) 미셸 푸코 (2011), pp. 445-448; Foucault (2007), pp. 326-328.

이 지점에서 생명에 관한 조절권력의 속성은 인간안보 개념과 연결된다. 인간안보위원회(CHS)가 2003년 제출한 『목전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 Now: HSN)』가 명시하듯이, 인간안보 개념은 인간의 질병, 빈곤, 노화, 폭력 등을 사회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아울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AIDS와 같은 질병은 경제적으로 유용한 생산 인구를 훼손시키기는 핵심 요인이며, 따라서 노령화 사회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임을 천명하고 있다.²⁹⁾ 이러한 인간안보 개념은 푸코의 지적과 유사하게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노동력 최적화를 목적으로 인구를 적절히 배치하고 관리하려는 조절 권력의 전형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안보위원회가 상기한 목적을 위해 제시하는 두 가지 전략은 “보호(Protection)”와 개인의 “역량강화(empowerment)” 전략이다. 보호전략은 국가, 국제기구, 혹은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전쟁, 질병 혹은 정치경제적 위협요인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며, 역량강화 전략은 개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들 스스로(on their own behalf)”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개인이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때 비로소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역으로 역량이 강화된 개인은 주변의 위협요인들을 인식하고 아울러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호와 역량강화 전략은 상호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³⁰⁾

이 두 가지 전략 중 특히 후자인 개인의 역량강화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호 전략은 푸코가 언급한 생명을 양육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안전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역량강화 전략은 전통적 복지체제에서 가정하는 ‘수동적’ 수혜자로서의 개인을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수혜자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인간안보 개념을 최초로 제기한 UNDP의 『HDR』 역시 개인들은 스스로 자기 보호 및 개발을 통해 사회, 국가,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소위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로 명시하고 있다.³¹⁾ 이와 같다면 인간안보의 역량강화 전략은 18세기 출현한 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체제에 대한 푸코의 논의는 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

3. 신자유주의와 인간안보: “선별적”으로 살리고 죽게 내버려두는”

푸코는 1978-79년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생명정치의 탄생(The Birth of Biopolitics)』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진행한다. 전년도 강연인 『안전, 영토, 인구』의 중심주제가 18세기 출현한 자유주의 통치성이라면, 『생명정치의 탄생』에서는 20세기 후반 등장한 신자유주의 체제에 주목한다.³²⁾

29)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CHS), *Human Security Now*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s, 2003), p. 16 and pp. 95-98; Alt (2011), locations 4082-91.

30) CHS (2003), pp. 10-12.

31) UNDP (1994), p. 24.

푸코에 따르면, 2차 대전 직후 새로운 국가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와 1950년대 이후 성장한 미국의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다소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국가개입주의를 반대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³³⁾ 그러나, 이들이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해서 고전적 자유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통적 자유주의가 가정하는 시장이 자유로운 ‘교환(exchange)’의 장소라면, 이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을 ‘경쟁(competition)’의 장소로 간주하는 명확한 차이점을 보였던 것이다.³⁴⁾

경쟁을 핵심적 시장원리로 간주한 결과 신자유주의는 국가주도의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비판과 수정을 시도한다. 전통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사회복지 체제에서 국가는 복지의 공급자이고 개인들은 복지의 소비자라고 간주된다. 국가는 복지체제를 통해 사회 부유 계층의 소득을 빈민 계층으로 이전시켜 결과적으로 빈부계층간 상대적인 격차를 감소시키려 한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화 정책이 경쟁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 자신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며, 국가주도의 복지체제는 ‘민영화(privatization)’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적 인간인 “호모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는 더 이상 복지의 소비자가 아니라 복지의 생산자이자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⁵⁾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원칙은 인간안보 증진을 위해 개인들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UNDP와 CHS의 논의들과 연결된다. 인간안보에 관한 각종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 스스로의 “자기관리(self-care)”를 통해 인간안보를 증진시키려는 주요 목적이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면, 이러한 논리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위험요인들(실업, 빈곤, 질병 등)을 개인에게 전가시켜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명확히 중첩되는 것이다.³⁶⁾ 푸코에 따르면, 통치는 단순히 지배나 강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주체 스스로의 기술(techniques of the self)”인 자기통제를 활용한다. 이러한 자기통제는 로즈(Nikolas Rose)가 후기 자유주의 시대의 효율적인 통치방식으로 규정하는 “원격 통치(governing at a distance)”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³⁷⁾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을 통해 개

32) 푸코는 『생명정치의 탄생』에서 제목과 달리 생명정치를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것의 이론적 기반으로 신자유주의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푸코의 언급은 Michel Foucault, *The Birth of Bio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p. 21-22, p. 185, p. 315 and pp. 323-324 참조.

33) Foucault (2008), pp. 78-79. 독일식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작동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허용하는 반면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보다 극단적으로 시장논리를 비경제적 영역(결혼, 보육, 형법 등)까지 확대 적용한다. Foucault (2008), pp. 242-243.

34) Foucault (2008), pp. 64-65 and p. 118.

35) Foucault (2008), pp. 142-147 and p. 226; Nadesan (2008), locations 895-913.

36) UNDP (1994), p. 24; CHS (2003), p. 95; Alt (2011), locations 4101-8.

37) Michel Foucault, “About the Beginning of the Hermeneutics of the Self: Two Lectures at Dartmouth,” *Political Theory* 21-2 (1993), pp. 203-204; Thomas Lemke, “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paper presented at the Rethinking Marxism Conferenc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September 21-24, 2000, pp. 12-13, <http://www.andosciasociology.net/resources/Foucault%2C+Governmentality%2C+and+C>

인 스스로의 책임감을 신장시킨다거나 빈곤층에 대한 소액대출(micro credit)을 확대해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인간안보 전략은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³⁸⁾

아울러, 개인 스스로의 자기관리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간자본(human capital)”을 확충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안보를 증진시키려는 전략 역시 신자유주의적 논리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인간을 존엄성의 주체로 간주하기 보다는 투자의 대상인 자본으로 간주한다. 특히, 푸코의 지적대로 인간자본론은 양육이나 결혼, 그리고 교육 영역에 있어서까지도 투자를 통해 경제적 이윤을 확보하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서 그 정점에 도달한다.³⁹⁾ 1960-70년대 한국이 교육과 보건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간자본을 창출하고 그 결과 인간안보 증진에 성공했다는 CHS의 평가는 이러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⁴⁰⁾

만약 자기관리에 실패하고 또한 투자의 대상으로서도 적합하지 못한 개인들의 인간안보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인간안보는 노령인구나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minimum)’의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나, 그러한 취약 계층이 아니면서 그렇다고 유용한 인간자본으로 기능하지도 못하는 개인들의 인간안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⁴¹⁾ 푸코에 따르면, 신자유주는 사회 복지정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층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수준 이상에서는 모든 개인들을 기업가로 만들어 경쟁시킨다. 그러한 경쟁에서 도태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최소 생계를 연명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보장을 제공할 뿐이다. 이러한 방식은 완전고용에 기반하고 있는 전통적 복지국가체제에 비해 다량의 ‘유동적’ 노동인구를 생성함으로써 시장의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노동력배치를 가능하게 한다.⁴²⁾

또한, 신자유주의는 체제에 순응하지 못하는 개인들을 사회경제적 질서에 대한 위협인자로 간주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관리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제거’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역설적이게도 사법적 주권권력이나 신체 교정을 추구하는 규율권력을 그 수단으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⁴³⁾ 아울러 신자유주의는 차별적 공간을 창출하고 각 공간에 따라 관리방식을 다르게 하는 “구역화 전략(zoning strategy)”를 구사하기도 한다.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특구를 창설하는 등 정치경제적 공간을 차등화하고 그 안에서 경제적 효용 가치에 따라 노동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상황은 그 전형적 예라 할 수 있다.⁴⁴⁾ 보

ritique+IV-2.pdf (검색일: 2012. 7. 9). Nikolas Rose, Pat O’Malley, and Mariana Valverde, “Governmentality,” pp. 9-10 and pp. 17-18,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474131## (검색일: 2012. 7. 9).

38) Alt (2011), locations 4069-77; CHS (2003), p. 80.

39) Foucault (2008), pp. 226-232 and pp. 243-244.

40) CHS (2003), p. 76.

41)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책에 대한 논의는 CHS (2003), p. 85, p. 89 and p. 138 참조.

42) Foucault (2008), pp. 206-207.

43) Nadesan (2008), locations 929-969; 데이비드 하비, 임동근 외 역,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서울: 문화과학사, 2010), pp. 41-42.

다 극단적인 경우 신자유주의는 후기 근대사회의 도시에 만연하고 있는 슬럼화 지구처럼 격리 공간을 창출하기도 한다. 여기서 권력의 행사방식은 규율이나 조절권력처럼 문제의 원인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초적으로 배제해 버리는 ‘폭압적’ 양상이 될 수 있다.⁴⁵⁾ 그러한 공간에 격리된 ‘무가치한’ 개인들은 권력에 의해 배제됨으로써 비로소 권력의 대상물이 되는 “호모사케르(Homo Sacer)”가 되는 것이다.⁴⁶⁾

푸코는 비록 신자유주의의 배제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인종주의(racism)에 대한 그의 논의들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푸코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후반부에서 생명정치의 시대에 어떻게 나치 독일의 행위와 같이 대규모 전쟁과 살육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인종주의를 제시한다. 즉,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열등하고 위험한 인간들을 죽여야 한다는 역설적 논리가 국가간 전쟁, 내전, 계급간 갈등, 그리고 정치체제를 막론하고 생명정치에 죽음이라는 단절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⁴⁷⁾ 모든 개인을 기업가로 만들어 경쟁시키고 그로부터 도태된 개인들을 열등한 부류로 배제시키는 신자유주의의 논리는 결국 이러한 인종주의를 표칭한다고 볼 수 있다. 보호해야 할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을 차별적으로 구분하는 신자유주의적 인간안보 역시 결국 생명정치 속에서 생명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인종주의의 논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Ⅲ. 국제정치의 균형과 인간안보

1. 지구적 자유주의 통치성과 국가간 균형

자유주의 통치성은 국가라는 권력 제도가 인구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보다 ‘섬세해진’ 통치술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주의 통치성은 공간적 범위를 확장해 국가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즉, ‘지구적(global)’ 자유주의 통치성은 존재하는가? 지구적 통치성 역시 주류 국제관계학의 지구적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개념이나, 초국적 자본을

44) Aihwa Ong, *Neoliberalism As Excep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 pp. 97-118; Ann Selmezi, “... we are being left to burn because we do not count”: Biopolitics, Abandonment, and Resistance,” in Nicholas J. Kiersey and Doug Strokes (eds.), *Foucaul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Critical Engagements* (London: Routledge, 2011), pp. 167-169.

45) 현대 도시의 공간격리에 대해서는 사카이 다카시, 오하나 역, 『통치성과 ‘자유’』 (서울: 그린비, 2011), pp. 238-281 참조. 영화 “디스트릭트9(district 9)”은 권력의 격리 전략을 극단적으로 표상한다. 9 구역에 격리된 무력한 외계인들은 경계밖 인간들에 의해 억압적으로 관리되는 피동적 대상물이다.

46) 아감벤(Giorgio Agamben)에 따르면, 호모사케르는 “살해는 가능하지만 제물로는 바쳐질 수 없는 생명”이다. 즉, 법으로부터도 배제되고 동시에 신앙적 대상으로부터도 배제되는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이다. 그럼에도 호모사케르는 배제됨으로써 비로소 정치에 ‘포함’ 되는 배제와 포함의 ‘비식별역’에 위치하는 정치적 대상이다.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사케르』 (서울: 새물결, 2008), pp. 45-47.

47) 미셸 푸코(1998), pp. 292-302.

통해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맑시즘적 접근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통치성 개념은 경험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적 성향의 거버넌스 개념과 다르며, 아울러 국가를 핵심 분석단위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맑스주의적 접근과 차이가 있다.⁴⁸⁾

그동안 통치성 개념을 국제정치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들은 국가간 ‘공간(space)’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구성하고 통제하는 정치적 기제들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둘러싼 권력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난민과 이민 문제와 같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인구의 유동문제,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조직의 형성 과정, 그리고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 및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국가간 위기관리 문제 등은 통치성 연구의 주요 대상들이다.⁴⁹⁾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정작 근대 유럽의 국가간 관계에 대한 푸코의 경험적 분석을 간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⁵⁰⁾ 주지하듯, 푸코의 통치성 개념은 자유주의 체제라는 근대유럽 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통치성 개념이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제3세계 국가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푸코 역시 통치성 개념을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⁵¹⁾ 그럼에도 푸코는 『안전, 영토, 인구』 후반부에서 자유주의 통치성 속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상호간 관계를 수립하는지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분석을 시도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자유주의 통치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조절권력은 생명관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대내적 안전장치인 ‘내치(police)’를 작동시킨다. 이에 더해 푸코는 대외적인 안전장

48) Jason R. Weidner, “Governmentality, Capitalism, and Subjectivity,” in Nicholas J. Kiersey and Doug Stokes (eds.), *Foucaul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Routledge, 2011), p. 28; Wendy Larner and William Walters, “Introduction: Global Governmentality: Governing International Spaces,” in Wendy Larner and William Walters (eds.), *Global Governmentality: Governing International Spaces* (New York: Routledge, 2006), pp. 16–17.

49) Robyn Lui, “The International Government of Refugees,” in Wendy Larner and William Walters (eds.), *Global Governmentality: Governing International Spaces* (New York: Routledge, 2006), pp. 116–135; William Walters, “The Political Rationality of European Integration,” in Wendy Larner and William Walters (eds.), *Global Governmentality: Governing International Spaces* (New York: Routledge, 2006), pp. 155–173; Claudia Aradau and Rens Van Munster, “Taming the Future: the *Dispositif* of Risk on the War on Terror,” in Louise Amoore and Marieke de Goede (eds.), *Risk and the War on Terror* (London: Routledge, 2008), pp. 23–40; Miguel De Larrinaga and Marc G. Doucet, “Governmentality, Sovereign Power and Interventio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 Invasion of Iraq,” in Miguel de Larrinaga and Marc G. Doucet (eds.), *Security and Global Governmentality: Globalization, Governance and the State* (London: Routledge, 2010, kindle edition), locations 2848–3259.

50) Mitchell Dean,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London: Sage, 2010), p. 229.

51) Duffield (2006), pp. 14–15; Jonathan Joseph, “Governmentality of What? Populations,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Nicholas J. Kiersey and Doug Stokes (eds.), *Foucaul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Routledge, 2011), pp. 56–59.

치로 국가간 “균형(equilibrium)” 유지를 위한 군사-외교 장치에 주목한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자국의 법을 강요할 수 없게 만들고, 소수의 강대국들(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로 한정된 국제체제를 구성하며,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국가의 국력이 다른 국가들 국력의 총합을 넘을 수 없게 하려는 시도가 모두 균형유지를 위한 군사-외교 장치의 주업무라는 것이다.⁵²⁾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30년 전쟁이 종결되면서, 유럽은 더 이상 로마제국이나 교회 권력과 같은 단일한 세력이 지배하는 위계적 구도가 아닌 복수의 강대국간 경쟁체제로 재편되었다. 따라서 이후 유럽 국가들의 핵심 목표는 대내적으로 적절한 내치를 통해 국력을 증강시키면서도 그로 인해 강대국간 균형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가들은 전쟁, 조약, 그리고 상비군 체제 등과 같은 수단을 구축함으로써 유럽의 균형을 관리하려는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샤를마뉴부터 히틀러까지 독일이 유럽의 균형에 끊임없이 도전한 핵심 국가였다는 점에서 근대 유럽은 결국 “독일이 제국의 꿈을 잊게 만드는 방식(the way of making Germany forget the Empire)”이기도 하였던 것이다.⁵³⁾

아울러 푸코는 『생명정치의 탄생』에서 이러한 균형 논리와는 공존하지만 그 성격이 다른 새로운 국가간 논리에 주목한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중상주의 국가간 균형체제가 ‘영합(zero sum)’ 게임이라는 논리에 기반했다면, 이제 국가간 경쟁이 상호에게 이득이 된다는 ‘비영합(non zero sum)’ 게임의 논리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이러한 논리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교환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아담 스미스의 시각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아울러 유럽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세계시장의 확대라는 현실 속에서 등장하였다. 칸트의 자유무역을 통한 ‘영구평화론’이나 국제기구의 창설노력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⁵⁴⁾

사실 국제정치에 대한 푸코의 시각은 주류 국제정치학에서 월츠(Kenneth Waltz)가 대표하는 소위 ‘방어적(defensive)’ 현실주의나 더 나아가 무정부 상태 속에서도 국가간 협력이 가능하다는 신자유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방어적 현실주의에 따르면, 국가들은 대외적으로 팽창적일 경우 타국들이 연합해 균형전략으로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팽창주의적 행태보다는 상호간 세력균형의 안정적 유

52) 미셸 푸코 (2011), pp. 403-409; Foucault (2007), pp. 296-300. 푸코는 ‘평형(equilibrium)’ 과 ‘균형(balance)’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계에서 균형 개념은 ① 대등한 세력추구 현상, ② 수립되어야 할 이상적인 세력분포, 그리고 ③ 국가들의 대외전략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Jack S. Levy, “What Do Great Powers Balance Against and When?” in T. V. Paul, James J. Wirtz, and Michel Fortman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29-35.

53) 미셸 푸코 (2011), pp. 410-419; Foucault (2007), p. 304. 푸코가 베스트팔렌 조약이후 근대 유럽 질서를 주권국가간 경쟁체제로 과장되게 설명하고 있다는 비판은 Halvard Leira, “Taking Foucault beyond Foucault: Inter-state Governmentality in Early Modern Europe,” in Nicholas J. Kiersey and Doug Stokes (eds.), *Foucaul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Routledge, 2011), pp. 124-129 참조.

54) Foucault (2008), pp. 52-60.

지를 추구하게 된다. 한편, 신자유제도주의에 따르면, 국제레짐은 단순히 국가간 균형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독자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국가간 공통 이익은 협력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⁵⁾

그러나 푸코는 이들 주류 국제관계 이론이 ‘포착’하지 못하는(혹은 그럴 의사가 없는) 국가간 관계의 또다른 단면을 추론해 낸다. 즉, 국가들이 상호간 세력균형이나 협력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 각 국가들은 대내적으로 건실한 내치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왜냐하면 어떠한 국가라도 적절한 내치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그 국가의 국력이 쇠퇴함으로써 국가간 세력균형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상대방의 내치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호간에 감시할 권리를 가진다. 내치의 목표가 최초 국가간 세력관계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경쟁국들의 내치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1814년 비엔나 체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력균형이란 대원칙으로 인해 건실한 내치는 이제 일국의 목표가 아니라 경쟁하는 국가들 상호간의 공통 목표가 된다.⁵⁶⁾

푸코는 근대 유럽의 국제관계에 대한 논의를 20세기로 확대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논의는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통해 정치경제적으로 보다 밀접해진 현시기 국가간 관계 및 인간안보 논의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⁵⁷⁾ 특히, 국가간 안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국의 내치를 주목한다는 푸코의 지적은 21세기 초 소위 ‘실패국가’에 대해 강대국들이 왜 그토록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준다. 실패국가는 자국민의 생명에 대한 관리 및 조절에 실패한 국가들로서 그로 인해 빈곤, 내전, 그리고 국제적 테러리즘의 온상이 되며, 이것은 곧 안정적 국제질서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이들 국가는 주변국으로 난민뿐만 아니라 내전 세력과 연계된 불법적 경제조직들을 확산시키고 인종청소와 같은 범죄행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 알 카에다의 폭력적 극단주의의 ‘진원지(epic center)’이며, 이곳으로부터 미국의 국가안보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는 오바마의 주장은 이를 단적으로 뒷받침한다.⁵⁸⁾

55)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pp. 126-128.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방어적 현실주의에 대해 ‘공세적(offensive)’ 현실주의자 미어샤이머는 무정부상태에서 모든 국가가 그와 같이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비한 최선의 전략은 결국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John J. Mearsheimer, “Reckless States and Realism,” in Ken Booth (ed.), *Realism and Worl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11), pp. 126-137.

56) 미셸 푸코 (2011), pp. 426-427; Foucault (2007), pp. 314-315.

57) 탈냉전기 미국의 패권적 행태는 이러한 근대유럽의 세력균형 논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형성되고 있는 미중간 ‘협조체제’는 냉전기 미소 협조체제(알타체제)와 같이 안정적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낸다. 미중 협조체제는 박홍서,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9.19 공동성명 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국제정치논총』 제47집 (3)호 (2007), pp. 77-97 참조.

58) Duffield (2006), p. 28; 헤어프리트 뮐클러, 공진성 역, 『새로운 전쟁: 군사적 폭력의 탈국가화』 (서울: 책세상, 2012), pp. 265-271. 오바마 발언은 “Remarks by the President in Address to

이와 같다면, 인간안보는 결국 선진 국가들이 실패국가들 및 이들과 연계된 문제들을 관리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지구적 통치성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푸코가 근대 유럽 국가간 균형유지를 위한 도구로써 전쟁, 조약, 그리고 상비군을 거론하고 있다면, 인간안보는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21세기적 도구라 할 수 있는 것이다.⁵⁹⁾

2. 지구적 균형 기제로서의 인간안보

인간안보에 관한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한다. 지구화로 인한 국가간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 지역의 인간안보 상황은 다른 지역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맥락에서 인간안보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 국가, 그리고 국가간 관계를 연결하는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HDR』는 기아, 공해, 질병, 마약거래, 그리고 테러리즘 같이 인간안보를 훼손하는 요인들은 더 이상 한 국가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명시하고 있다.⁶⁰⁾ 『HSN』 역시 지구화 시대에 어떤 국가라도 다른 국가내의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국가들과 비정부기구 등을 망라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⁶¹⁾

특히, 인간안보 침해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려는 의도는 ICISS의 2001년 보고서인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에 명시되고 있다. 보고서는 냉전 종결로 인해 전통적인 국가간 분쟁이 감소하고 그 대신 내전이 점증하면서 대량 학살과 인종청소 등의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엔헌장에 따른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개입을 내전으로 인한 국제안보의 불안정, 그리고 자금과 무기를 매개로 일국의 내전이 선진국으로 연결된다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다.⁶²⁾ 냉전시기 국가들의 동맹체제가 주로 동서진영의 지정학적 대결이라는 양상을 보였다면, 탈냉전기 국가간 동맹은 인간안보의 증진을 통한 국제질서 유지라는 생명정치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⁶³⁾

이러한 R2P개념은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됨으로써 보다 현실화되었다. 본 회의는 각 국가들이 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그리고 반인륜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만약 그러한 책임이 방기되어질 경우 국제사회가 유

the Nation on the Way Forward in Afghanistan and Pakistan,” White House, December 1, 2009,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address-nation-way-forward-afghanistan-and-pakistan> (검색일: 2012. 9. 14) 참조.

59) 인간안보를 지구적 통치성의 결과물로 간주하는 시각은 Voelkner (2010), locations 3954-70 참조. 유럽 균형체제의 유지수단에 대한 푸코의 언급은 미셸 푸코 (2011), pp. 418-419.

60) UNDP (1994), p. 22.

61) HSN (2003), p. 102.

62) ICIS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2001), p. 5 and p. 31, <http://responsibilitytoprotect.org/ICISS%20Report.pdf> (검색일: 2012. 7. 9).

63) Duffield (2006), p. 29.

엔현장 및 안보리를 통해 “적절하고 단호한 방식(timely and decisive manner)”의 집단적 대응을 하도록 합의하였던 것이다. 물론, 본 회의는 군사적 개입을 개별 국가가 인간안보 침해 상황으로부터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데 “명백히 실패(manifestly failing)”했을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국가들을 도와 그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접근 방법으로 간주하였다.⁶⁴⁾

인간안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무차별적인 원조 및 보호보다는 개인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면, R2P의 이러한 전략 역시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드러낸다. 특히, R2P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가의 시민사회 강화를 “현명한 투자(a wise investment)”로 본다거나, 인간안보 침해에 따른 “비용”이 “효용”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를 들어 인간안보 침해 세력을 설득하려는 태도는 명확히 신자유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안보가 침해되는 국가에 외국의 투자나 원조가 감소될 수밖에 없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수용되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지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⁶⁵⁾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특징이 양육 및 형사제도와 같은 비경제적인 영역까지도 경제적 투자나 효용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푸코의 지적에 비추어 보면, R2P의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명확히 드러난다.

물론, 국가간 개입은 인도주의적 원칙이라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인류의 도덕적 양심에 충격을 주는(shocks the moral conscience of mankind)” 범죄행위의 처리에 있어 해당 국가가 무책임하다면, 국제사회의 개입은 정당하다는 것이다.⁶⁶⁾ 그럼에도, 다수의 개입사례에서 인도주의적 원칙에 반하는 현실주의적 이해관계가 드러났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유고에서 보스니아계 주민에 대한 인종청소는 나토군의 폭격 이후에 오히려 현실화되었다거나, 르완다에서 투치족에 대한 대량학살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일방적으로 철수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소말리아 내전에 개입한 미국이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임무를 넘어 다수의 소말리아 민간인들을 사살했다는 사실이라든지, 이라크 침공 역시 미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입이었다는 비판은 인도주의적 개입 원칙과 합치되지 않는다.⁶⁷⁾

아울러, 맑스주의적 분석과 같이 국제사회의 개입을 초국적 자본과 이에 결부된 강대국들의 이익 확보라는 제국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991년 파리평화조약이후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적 개입을 인간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시장화를 추구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려는 정치경제적 의도로 볼 수도 있다. 사실, 시장화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인간안

64) UN General Assembly,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12 January 2009, p. 1, <http://globalr2p.org/pdf/SGR2PEng.pdf> (검색일: 2012. 7. 9).

65) UN General Assembly (2009), pp. 16-17.

66) ICISS (2001), p. 31.

67) Tadjbakhsh and Chenoy (2007), pp. 196-198; 조지 클레이 키에, “아프리카의 내전에 대한 인도적 간섭,” 앤드류 볼즈(편), 김한식, 박균열 역,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4), pp. 253-263.

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다는 CHS의 주장은 이러한 논리에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⁶⁸⁾ 그럼에도 경제적 동기만으로 유고나 소말리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등의 사례를 설명하기에는 일정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경우 국제적인 개입은 ‘신식민주의적’ 이윤 착취라는 공세적 논리보다는 주변지역으로 내전에 따른 위기 확산을 방지하거나 테러리즘에 대응하려는 방어적 논리가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⁹⁾

한편, 인간안보가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차용해 국제질서의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효율적인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 집행 과정에서 인간안보를 오히려 훼손하는 신자유주의의 “호전적 측면(martial face)”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즉,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세력이나 이슈에 대해서는 ‘살리는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권력’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⁷⁰⁾ 특히, 이러한 양상은 9.11 이후 정치적 신보수주의와 경제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결합한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미국은 대테러전쟁 과정에서 관타나모 수용소가 상징하듯 생명정치적 조절권력과는 부합하지 않는 징벌적 주권권력을 구사하였던 것이다.⁷¹⁾

아울러, 신자유주의의 구역화 전략 역시 국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 구역화 전략이 경제적 효용가치에 따라 공간과 노동자들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라면, 지구적 공간에 있어서도 그 지역이 국제질서의 균형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지에 따라 인간안보 전략이 선별적으로 구사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9년 나토군의 코소보 폭격,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리고 2011년 리비아 사태는 그들 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냉전 해체 이후 지정학적 중요성이 그만큼 떨어진 르완다나 소말리아에서 자행된 대규모 학살은 방관되거나 사후적 개입을 통한 소극적 문제해결만이 모색되었다. 특히, 1994년 다국적군의 일방적 철수로 ‘방기’된 소말리아는 이후 내전의 확산과 그로 인한 인간안보의 광범위한 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다.⁷²⁾

물론,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로 인해 그만큼 국제적 개입이 지연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 이후 그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국가들이 민감할수록 국제적 개입은 그만큼 어렵거나 혹은 한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상

68) Simon Springer, “The Neoliberalization of Security and Violence in Cambodia’s Transition,” in Sorpong Peou (ed.), *Human Security in East Asia: Challenges for Collaborative Action* (London: Routledge, 2009), pp. 125–141; CHS (2003), p. 75.

69) 헤어프리트 뮌클러 (2012), pp. 266–267.

70) Nadesan (2008), locations 1019–36.

71) Miguel De Larrinaga and Marc G. Doucet, “Sovereign Power and the Biopolitics of Human Security,” *Security Dialogue* 39–5 (2008), pp. 530–533.

72) Dauda Abubakar, “Identity Politics, Violent Conflicts, and the Challenges of Human Security in Africa,” in Jamila J. Abubakar, Kenneth Omeje, and Habu Galadima (eds.), *Conflict of Securities: Reflections on State and Human Security in Africa* (London: Adonis & Abbey, 2010), pp. 66–68; 피터 아이흐스테드, 강혜정 역, 『해적국가』 (서울: 미지북스, 2011), pp. 233–234.

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6년 7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으로 발생한 천여명의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침묵’ 하였는데, 이것은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그만큼 암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2012년 시리아 사태에 대한 국제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합치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⁷³⁾ R2P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상임이사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유엔의 강조는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⁷⁴⁾

IV. 결론: 인간안보의 폐기?

이상에서 본 논문은 푸코가 제기한 자유주의 통치성과 생명정치 담론을 통해 인간안보를 분석하였다. 자유주의적 통치성에 기반한 조절권력은 기존의 주권권력이나 규율권력과는 그 작동방식이 상이하다. 주권권력이나 규율권력이 금지와 허용이라는 이항분할 전략에 기초해 개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조절권력은 그러한 강제적 방법이 아닌 방임적 전략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권력행사를 추구한다. 즉, 주권권력이나 규율권력이 생명을 죽이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면, 조절권력은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조절권력은 대내적으로 내치와 대외적으로는 균형체제라는 안전장치를 구축함으로써 권력의 핵심자산인 인간의 생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한다.

인간안보 담론의 근저에는 이러한 생명정치적 속성이 존재한다. 안보의 대상을 전통적인 국가안보가 아니라 개인의 생명으로 치환시킴으로써 권력의 원활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자유주의적 조절권력의 속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확산됨에 따라 인간안보의 적용과정에 있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즉, 인간안보에 관련된 해당 개인과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렇지 못한 주체들에 대해서는 배제 전략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다면 권력의 보다 섬세해진 통제기제인 인간안보 개념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반대로 ‘실존적인’ 차원에서 인간안보를 증진시킬 수밖에 없다면, 푸코의 생명정치 분석에 기반한 인간안보 비판은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 분석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생명이 관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저항의 대상임을 지적하고 있는 푸코의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푸코에 따르면, 권력이 생명을 핵심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만큼 그에 대한 저항

73) Steven Lee Myers and J. David Goodman, “Clinton Says Russian Inaction May Lead to Syrian Civil War,” *The New York Times* (May 31, 2012), http://www.nytimes.com/2012/06/01/world/middleeast/frustrated-clinton-says-russian-inaction-may-lead-to-syrian-civil-war.html?_r=1 (검색일: 2012. 7. 9); Noam Chomsky, “On the US-Israeli Invasion of Lebanon,” *Al-Adab* (August 19, 2006), <http://www.chomsky.info/articles/20060819.htm> (검색일: 2012. 9. 14).

74) UN General Assembly (2009), pp. 26-27.

역시 생명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즉, 그러한 투쟁은 정의의 회복과 같은 고전적 권리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육체, 건강, 행복, 욕구의 만족에 대한 권리, 모든 탄압이나 소외를 넘어 누구나 자신의 현재 모습과 가능한 모습을 발견할 권리”를 쟁취하려는 투쟁인 것이다.⁷⁵⁾

그렇다면, 인간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사실 그 ‘실천적’ 전략을 성공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시작은 최소한 신자유주의적 인간안보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인간안보는 오히려 인간안보를 훼손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개인들간의 경쟁을 극대화시키고, 아울러 그러한 경쟁에서 도태된 이들을 배제해 버린다. 개인들의 ‘등급’에 따라 인간안보를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고 간주되는 개인들의 인간안보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간 관계에서도 이러한 차별의 논리가 드러난다. 지구적 균형을 위해 지정학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와 비교해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인간안보는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안보의 차별적 적용을 거부하고 그 적용범위를 높은 수준으로 확장시키는 문제는 결국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가치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정의(justice)’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롤즈(John Rawls)가 제시하는 ‘민주적 평등(democratic equality)’ 원칙은 의미 있는 규범적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롤즈에 따르면,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한 구성원의 이익이 다른 구성원의 손해를 초래한다거나, 혹은 둘 모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정의의 원칙에 위반된다.⁷⁶⁾ 이와 같다면, 신자유주의적 인간안보의 ‘효율적’ 적용은 취약한 주체들(개인, 국가)의 인간안보를 오히려 훼손한다는 점에서 매우 ‘정의’롭지 못한 행태라 할 수 있다. 대안적 인간안보 전략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거부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안보의 적용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의 인간안보가 훼손되지 않는 일종의 파레토 최적상태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75) 푸코 (2010), pp. 156-157. 하트(Michael Hart)와 네그리(Antonio Negri)는 푸코의 논의를 기반으로 생명을 매개로 한 투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생명을 통제하려는 지구적 권력(제국)은 필연적으로 지구적 범위의 생명을 위한 투쟁을 촉발시켜 궁극적으로 제국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윤수중 역, 『제국』 (서울: 이학사, 2009), pp. 57-61 and pp. 502-509; Thomas Lemke, *Biopolitics: an Advanced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pp. 50-51 and pp. 71-73.

76) 존 롤즈,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서울: 서광사, 1985), pp. 95-103 and pp. 119-127.

참고 문헌

- 데이비드 하비, 임동근 외 역,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서울: 문화과학사, 2010.
- 미셸 푸코, 박정자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서울: 동문선, 1998a.
- _____.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 1998b.
- _____. 박정자 역, 『비정상인들』 서울: 동문선, 2001.
- _____. 이규현 역, 『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 서울: 나남, 2010a.
- _____. 이승철 역, 『푸코의 맑스: 듯치오 프롬바도리와의 대담』 서울: 갈무리, 2010b.
- _____. 오토르망 역, 『안전, 영토, 인구』 서울: 난장, 2011.
- 박홍서,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9.19 공동성명 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국제정치논총』 제47집 3호 (2007).
- 사카이 다카시, 오하나 역, 『통치성과 ‘자유’』 서울: 그린비, 2011.
- “삶 통제하는 신자유주의, 푸코에게 대안을 묻다.” 『한겨레신문』 2012. 2. 21.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520146.html> (검색일: 2012. 8. 26).
- 서동진, “신자유주의 분석가로서의 푸코: 미셸 푸코의 통치성과 반정치적 정치의 회로.” 『문화/과학』 16권 2호 (2009).
- 슬라보예 지젝 외, 이운경 역, 『매트릭스로 철학하기』 서울: 한문화, 2011.
- 안득기, “인간안보와 지역협력 사례연구: 동티모르 사태와 동아시아 국가협력을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제2권 2호 (2009).
-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윤수종 역, 『제국』 서울: 이학사, 2009.
- 이상환, “전염병과 인간안보, 그리고 국가안보.” 『국제지역연구』 제12권 3호 (2008).
- 이신화,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정치: 세계정치와 동아시아의 안보 구상』 서울: 인간사랑, 2006.
- 전 용,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제44집 1호 (2004).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2008.
- 조지 클레이 키에, “아프리카의 내전에 대한 인도적 간섭.” 앤드류 볼즈 편, 김한식, 박균열 역,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4.
- 존 롤즈,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서울: 서광사, 1985.
- 피터 아이흐스테드, 강혜정 역, 『해적국가』 서울: 미지북스, 2011.
- 헤어프리트 뮌클러, 공진성 역, 『새로운 전쟁: 군사적 폭력의 탈국가화』 서울: 책세상, 2012.

- Abubakar, Dauda. "Identity Politics, Violent Conflicts, and the Challenges of Human Security in Africa." In Jamila J. Abubakar, Kenneth Omeje, and Habu Galadima, eds. *Conflict of Securities: Reflections on State and Human Security in Africa*. London: Adonis & Abbey, 2010.
- Abubakar, Jamila J., Kenneth Omeje, and Habu Galadima, eds. *Conflict of Securities: Reflections on State and Human Security in Africa*. London: Adonis & Abbey, 2010.
- Alt, Suvi. "Problematizing Life under Biopower: A Foucauldian versus an Agambenite Critique of Human Security." In David Chandler and Nik Hynek, eds. *Critical Perspectives on Human Security: Rethinking Emancipation and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2011.
- Aradau, Claudia and Rens Van Munster. "Taming the Future: the Dispositif of Risk on the War on Terror." In Louise Amoore and Marieke de Goede, eds. *Risk and the War on Terror*. London: Routledge, 2008.
- Chomsky, Noam. "On the US-Israeli Invasion of Lebanon," *Al-Adab*. August 19, 2006. <http://www.chomsky.info/articles/20060819.htm> (검색일: 2012. 9. 14).
-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CHS). *Human Security Now*.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s, 2003.
- Cox, Robert W.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 De Larrinaga, Miguel and Marc G. Doucet. "Sovereign Power and the Biopolitics of Human Security." *Security Dialogue* 39-5 (2008).
- _____. "Governmentality, Sovereign Power and Interventio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 Invasion of Iraq." In Miguel de Larrinaga and Marc G. Doucet, eds. *Security and Global Governmentality: Globalization, Governance and the State*. London: Routledge, 2010, kindle edition.
- Dean, Mitchell.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London: Sage, 2010.
- Duffield, Mark. "Human Security: Linking Development and Security in an Age of Terror." In Stephan Klingebiel, ed. *New Interfaces between Security and Development: Changing Concepts and Approaches*. Bonn: Dt. Inst. für Entwicklungspolitik, 2006.
- Evans, Brad. "Foucault's Legacy: Security, War and Violence in the 21st Century." *Security Dialogue* 41-4 (2010).

- Foucault, Michel.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Introduc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90.
- _____. "About the Beginning of the Hermeneutics of the Self: Two Lectures at Dartmouth." *Political Theory* 21-2 (1993).
- _____.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New York: Picador, 2007.
- _____. *The Birth of Bio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 _____. "Society Must Be Defended." New York: Picador, 2003.
- Gordon, Colin. "Governmental Rationality: An Introduction."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and Peter Miller,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With Two Lectures by and an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 Hynek, Nik. "Rethinking Human Security: History, Economy, Governmentality." In David Chandler and Nik Hynek, eds. *Critical Perspectives on Human Security: Rethinking Emancipation and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2011.
- ICIS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2001. <http://responsibilitytoprotect.org/ICISS%20Report.pdf> (검색일: 2012. 7. 9).
- Joseph, Jonathan. "Governmentality of What? Populations,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Nicholas J. Kiersey and Doug Stokes, eds. *Foucaul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Critical Engagements*. New York: Routledge, 2011.
-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Larner, Wendy and William Walters. "Introduction: Global Governmentality: Governing International Spaces." In Wendy Larner and William Walters, eds. *Global Governmentality: Governing International Spaces*. New York: Routledge, 2006.
- Leira, Halvard. "Taking Foucault beyond Foucault: Inter-state Governmentality in Early Modern Europe." In Nicholas J. Kiersey and Doug Stokes, eds. *Foucaul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Critical Engagements*. London: Routledge, 2011.
- Lemke, Thomas. "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Paper presented at the Rethinking Marxism Conferenc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September 21-24, 2000.
- _____. *Biopolitics: an Advanced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 Ley, Jack S. "What Do Great Powers Balance Against and When?" In T. V. Paul, James J. Wirtz, and Michel Fortman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Lui, Robyn. "The International Government of Refugees." In Wendy Larner and William Walters, eds. *Global Governmentality: Governing International Spaces*. New York: Routledge, 2006.
- Myers, Steven Lee and J. David Goodman. "Clinton Says Russian Inaction May Lead to Syrian Civil War." *The New York Times*, May 31, 2012. http://www.nytimes.com/2012/06/01/world/middleeast/frustrated-clinton-says-russian-inaction-may-lead-to-syrian-civil-war.html?_r=1 (검색일: 2012. 7. 9).
- Nadesan, Majia Holmer. *Governmentality, Biopower, and Everyday life*. New York: Routledge, 2008.
- Mearsheimer, John J. "Reckless States and Realism." In Ken Booth, ed. *Realism and Worl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11.
- Newman, Edward. "Critical Human Security Stud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6 (2010).
- Ong, Aihwa. *Neoliberalism as Exception: Mutations in Citizenship and Sovereign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
- Peou, Sorpong, ed. *Human Security in East Asia: Challenges for Collaborative Action*. London: Routledge, 2009.
- "Remarks by the President in Address to the Nation on the Way Forward in Afghanistan and Pakistan." White House. December 1, 2009.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address-nation-way-forward-afghanistan-and-pakistan> (검색일: 2012. 9. 14).
- Reveron, Derek S. and Kathleen A. Mahoney-Norris. *Human Security in a Borderless World*. Boulder: Westview Press, 2011.
- Rose, Nikolas, Pat O'Malley, and Mariana Valverde. "Governmentality."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474131## (검색일: 2012. 7. 9).
- Selmecezi, Anna. "'... we are being left to burn because we do not count': Biopolitics, Abandonment, and Resistance." In Nicholas J. Kiersey and Doug Strokes, eds. *Foucaul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Critical Engagements*. London: Routledge, 2011.
- Springer, Simon. "The Neoliberalization of Security and Violence in Cambodia's Transition." In Sorpong Peou, ed. *Human Security in East Asia: Challenges*

- for Collaborative Action*. London: Routledge, 2009.
- Tadjbakhsh, Shahrbanou and Anuradha M. Chenoy. *Human Security: Concepts and Implications*. London: Routledge, 2007.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 New Dimensions of Human Security*. 1994. http://hdr.undp.org/en/media/hdr_1994_en_chap2.pdf (검색일: 2012. 7. 9).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12 January, 2009. <http://globalr2p.org/pdf/SGR2PEng.pdf> (검색일: 2012. 7. 9).
- Voelkner, Nadine. “Governmentalizing the State: the Disciplining Logic of Human Security.” In Miguel de Larrinaga and Marc G. Doucet, eds. *Security and Global Governmentality: Globalization, Governance and the State*. London: Routledge, 2010, kindle edition.
- Walters, William. “The Political Rationality of European Integration.” In Wendy Larner and William Walters, eds. *Global Governmentality: Governing International Spaces*. New York: Routledge, 2006.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 Weidner, Jascon R. “Governmentality, Capitalism, and Subjectivity.” In Nicholas J. Kiersey and Doug Strokes, eds. *Foucaul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Critical Engagements*. London: Routledge, 2011.

Liberal Governmentality and Human Security : A Foucauldian Critique of Human Security

Hongseo Park
(Dongduk Women's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human security with a discourse of liberal governmentality and biopolitics raised by Michel Foucault. Regulatory power based on the liberal governmentality functions differently from the existing sovereign power and disciplinary power. While the latter two seek to either keep individuals under surveillance or impose punishment on them through the logic of permission and prohibition, the regulatory power taking the laissez-fair strategy attempts to take care of individuals's life so as to exercise power more efficiently. To meet this objective, the regulatory power takes two apparatuses of security such as police related to social welfare within its territory and military-diplomacy for international balance of power.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is closely connected to the liberal regulatory power. In particular, with neoliberalism dominating in the global scale, Human security capitalizes on the neoliberal strategy. That is, neoliberal human securit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ubjects' responsibility for their life and simultaneously takes a strategy of exception to those who are not able to live on their own behalf. Against such neoliberal human security, alternative strategy should be what extends the scope of social welfare system.

투 고 일 : 2012년 6월 30일
심 사 일 : 2012년 7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2년 8월 30일